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7
----------	----

제안년월일 : 2014년 12월 8일

제안자 : 운영위원장

## 1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「제7대 영등포구의회 지방의원 의정비 지급 기준금액」이 결정·통보됨에 따라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33조제1항제3호의 월정수당 지급기준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의 지급액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월정수당 지급 기준을 “ [별표 2] ”로 함.(안 제3조제3항)
- 나. 법제처 『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』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함.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『지방자치법』 제33조 및 『지방자치법 시행령』 제33조
- 나. 예산조치 : 2015년도 예산편성(안) 반영
- 다. 기타사항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의결사항 통보

【총무과-27438(2014.11.6)】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
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 
한다)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”을 “제3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  
구의회 의원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의원”을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  
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”으로, “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소요되는”을  
“보조활동에 필요한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영등포구”를 “서울특별시  
영등포구(이하 “영등포구”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”을 “서울특별시  
영등포구의회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 
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### 부칙

(시행일)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2]

**월정수당 지급 기준표(제3조제3항 관련)**

구 분	지 급 액
1년차('15년도) 월정수당	2,464,500원

비고 : 2 ~ 4년차('16 ~ '18년) 월정수당은 매년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로 인상하되, 지방자치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된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의 20%를 초과할 수 없다.

[별표 3]

**국내여비 지급 기준표(제4조제2항제1호 관련)**

(단위:원)

구분	철도운임	선박운임	항공운임	자동차 운임	현 지 교통비 (1일당)	숙박비 (1일당)	식비 (1일당)
영등포 구의원	1등급	2등 정액	정액	정액	20,000	46,000	25,000

- 비고 : 1. 의회 소재지내에서의 출장 및 여행(동일 특별시, 광역시, 시 또는 군내에서의 출장 및 여행을 말한다.)이나 출장 및 여행거리가 12km미만인 경우에는 현지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여야 한다.
2. 철도운임 구분표 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을 가리키며, 해당 철도운임 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.
3. 「공무원 여비규정」의 개정으로 위 표의 여비지급 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 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## 신 · 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의정활동비) ① <u>의원의 의정 활동 자료의 수집, 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.</u></p> <p>② <u>의정활동비는 영등포구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.</u></p>	<p>제2조(의정활동비) ① <u>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(이하 “의회” 라 한다) 의원(이하 “의원” 이라 한다)-- 보조활동에 필요한 -----</u> -----.</p> <p>② ----- <u>서울특별시 영등포구(이하 “영등포구” 라 한다) -----</u> -----.</p>
<p>제4조(여비) ① <u>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.</u></p> <p>② <u>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비의 종류와 지급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.</u></p> <p>1. · 2. (생략)</p> <p>3. <u>의회 소재지내에서의 출장 및 여행시에는 [별표 3]의 현지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한다.</u></p>	<p>제4조(여비) ① ----- ----- <u>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-.</u></p> <p>② ----- ----- <u>각 호-----</u>.</p> <p>1. ·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&lt;삭 제&gt;</u></p>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[별표2]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월정수당 지급 기준표(제3조 제3항 관련)</b>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r> <td style="width: 50%;">구 분</td> <td style="width: 50%;">지 급 액</td> </tr> <tr> <td>월 정 수 당</td> <td>2,325,000원</td> </tr> </table>	구 분	지 급 액	월 정 수 당	2,325,000원	<p>[별표 2]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월정수당 지급 기준표(제3조 제3항 관련)</b>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r> <td style="width: 50%;">구 분</td> <td style="width: 50%;">지 급 액</td> </tr> <tr> <td>1년차('15년도) 월정수당</td> <td>2,464,500원</td> </tr> </table> <p>비고 : 2 ~ 4년차('16 ~ '18년) 월정수당은 매년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로 인상하되, 지방자치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된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의 20%를 초과할 수 없다.</p>	구 분	지 급 액	1년차('15년도) 월정수당	2,464,500원																								
구 분	지 급 액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월 정 수 당	2,325,0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 분	지 급 액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년차('15년도) 월정수당	2,464,5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[별표3]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국내여비 지급 기준표(제4조 제2항 제1호 관련)</b>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(단위:원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철도운임</th> <th>선박운임</th> <th>항공운임</th> <th>자동차 운임</th> <th>현 지 교통비 (1일당)</th> <th>숙박비 (1일당)</th> <th>식비 (1일당)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영등포 구의원</td> <td>1등급</td> <td>2등 정액</td> <td>정액</td> <td>정액</td> <td>20,000</td> <td>46,000</td> <td>25,000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비고 : 1. 의회 소재지내에서의 출장 및 여행(동일 특별시, 광역시, 시 또는 군내에서의 출장 및 여행을 말한다.) 이나 출장 및 여행거리가 12km미만인 경우에는 현 지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여야 한다.  2. 철도운임 구분표 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을 가리키며, <u>당해</u> 철도운임 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.  3. 「공무원 여비규정」의 개정으로 위 표의 여비지급 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 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.</p>	구분	철도운임	선박운임	항공운임	자동차 운임	현 지 교통비 (1일당)	숙박비 (1일당)	식비 (1일당)	영등포 구의원	1등급	2등 정액	정액	정액	20,000	46,000	25,000	<p>[별표3]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국내여비 지급 기준표(제4조 제2항 제1호 관련)</b>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(단위:원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철도운임</th> <th>선박운임</th> <th>항공운임</th> <th>자동차 운임</th> <th>현 지 교통비 (1일당)</th> <th>숙박비 (1일당)</th> <th>식비 (1일당)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영등포 구의원</td> <td>1등급</td> <td>2등 정액</td> <td>정액</td> <td>정액</td> <td>20,000</td> <td>46,000</td> <td>25,000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비고 : 1. 의회 소재지내에서의 출장 및 여행(동일 특별시, 광역시, 시 또는 군내에서의 출장 및 여행을 말한다.) 이나 출장 및 여행거리가 12km미만인 경우에는 현 지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여야 한다.  2. 철도운임 구분표 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을 가리키며, <u>해당</u> 철도운임 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.  3. 「공무원 여비규정」의 개정으로 위 표의 여비지급 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 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.</p>	구분	철도운임	선박운임	항공운임	자동차 운임	현 지 교통비 (1일당)	숙박비 (1일당)	식비 (1일당)	영등포 구의원	1등급	2등 정액	정액	정액	20,000	46,000	25,000
구분	철도운임	선박운임	항공운임	자동차 운임	현 지 교통비 (1일당)	숙박비 (1일당)	식비 (1일당)																										
영등포 구의원	1등급	2등 정액	정액	정액	20,000	46,000	25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분	철도운임	선박운임	항공운임	자동차 운임	현 지 교통비 (1일당)	숙박비 (1일당)	식비 (1일당)																										
영등포 구의원	1등급	2등 정액	정액	정액	20,000	46,000	25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